

의안번호	2210794
의 퇴 인	이헌승의원
회 답 일	2025. 8. 11.
추계번호	25B317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6 신설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 지원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의6 신설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안 제17조의6제1항 및 제3항)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

려동물에 대한 진료·예방접종, 유실·유기동물 및 봉사동물의 건강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의 동물의료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공동물병원의 수, 지원단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기준·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동물병원의 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과 이에 대한 지원의 기준·수준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전국 동물병원은 총 5,312개소임(2025년 6월 기준)
 - ※ [참고자료] 전국 동물병원 개소 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참고자료] 전국 동물병원 개소 수(2025년 6월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지역	동물병원 수
서울	960
부산	277
대구	210
인천	244
광주	129
대전	116
울산	78
세종	35
경기	1,355
강원	165
충북	173
충남	293
전북	218
전남	234
경북	356
경남	351
제주	115
합계	5,312